

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”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제예술대학교(이하 ‘우리 대학’) 입학 전형의 선행 학습 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대상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에서 실기고사를 제외한 본 대학교사(논술 및 필답고사, 면접 및 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 및 실형고사 등)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입시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 및 출제 여부에 관한 평가 사항
2. 입시고사의 출제영역, 내용, 방법, 채점기준 및 시행에 관한 평가 사항
3.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에 관한 사항
4.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 및 입시고사의 개선에 관한사항
5.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 (구성) ① 입학전형 시 학과별 독자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형고사 등)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심의·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우리 대학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간사) 위원회의 업무는 입학팀에서 관장하며,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7조 (자체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) ① 자체영향평가는 본 대학교사가 종료된 후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한다.

제8조 (결과의 공시)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대학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